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·업무상횡령·사기·업무 방해·증거인멸교사·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위반

[서울중앙지방법원 2009. 10. 26. 2006고합463]



【전문】

【피고인】

【검사】이남석외 8인

【변호인】 법무법인 화현외 9인

【주문】

1

- 1. 피고인 1, 5를 각 징역 2년에, 피고인 2를 벌금 3,000만 원에, 피고인 3을 벌금 1,000만 원에, 피고인 4(항소심 판결의 피고인 2)를 벌금 700만 원에 각 처한다.
- 2. 피고인 2, 3, 4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,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각 노역장에 유치한다.
- 3. 다만, 피고인 1, 5에 대하여는 각 3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
- 4. 피고인 6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.
- 5. 피고인 2, 3, 4에 대하여 위 각 벌금액 상당의 가납을 명한다.
- 6.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(사기)의 점은 무죄.

【이유】

]

[이유]

]

【이유】

]

[이유]

【이유】

]

[이유]

]

[이유]

]

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